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1.18(0시) ~ 2021년 1.31(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요 지침 >

①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②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③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학원·교습소, 문화센터 등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④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⑤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밀줄 친 조치는 완화 불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붙임 7.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⑥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9.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⑦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의무화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⑧ 그 외

- 종교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교통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스포츠관람
 - 무관중 경기
- 목욕장업
 - 이용자 수칙 중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삭제,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이용 금지" 추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 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밑줄 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은 핵심 방역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②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4.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박혜수** 과장 **니성화** 전결 2021. 1. 18.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68 (2021. 1. 18.)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한민국 공개